

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[별표] <신설 2019. 4. 16.>

개선부담금의 부과기준일, 부과기간 및 납부기간(제9조제4항 관련)

반기별	부과기준일	부과기간	납부기간
1. 상반기	매년 6월 30일	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	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
2. 하반기	매년 12월 31일	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	다음 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